

제 253회 정례회
2006. 9. 11.(월)

제 안 설 명 서

○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제 안 설 명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 경 과

가.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제안일자 : 2006년 9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53회 정례회

- 2006년 9월 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강태원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935호, 2006. 4.28.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준수 사항과 직권남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취득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의원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며 그 절차 등은 의원 징계의 경우를 준용토록 함.

3. 검토보고요지 (의회운영전문위원 조재학)

-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준수 사항과 직권남용 금지 등 행위제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기타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제안설명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도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도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

- 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직무상 지득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8.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외 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도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도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되, 그 절차 등은 의원 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34조(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의3(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②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제79조(징계의 요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개정 2006.4.28>